

2014년 개정세법 – 국제조세 관련 주요내용

2014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국제조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축소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방지하고자, 17%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국내 근무시작일부 터 5년간”으로 제한(단, 20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 시에도 2014년말까지 특례를 계속 적용함)하였고, 적용대상에서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제외(단,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조특법 제18조의2).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

개정 조특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세액의 100%가 감면되는 동안은 100%, 법인세 감면대상세액의 50%가 감면되는 동안은 50%)해주던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개정 조특법 제121조의 2 제3항).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해외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64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국조법”이라 합니다)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해외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보수집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개정 국조법에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10%) 부과사유에 “미신고 · 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소명요구 불이행”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 국조법 제34조의3 및 제35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5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

개정 국조법에서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대상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집단”을 신설하였으며, 정기적 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추가하였고,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를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개정 국조법 제31조 및 제31조의3).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체결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개정 조특법에서는 내국인 등의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배제 대상에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인투자”를 신설하였으며(개정 조특법 제121조의2 제11항),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에 “외국법인(외국투자가)의 실질주주 명세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동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다만, 외국법인의 실질주주 명세서 제출의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합니다) 및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해외직접투자시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에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를 추가하였으며, 의무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종전 해외현지법인 지분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과태료 부과사유도 종전 과세관청의 자료제출요구 불이행에서 “자료 미제출시”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던 개인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 3, 소득세법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 3).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법인) 또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개인)부터 적용됩니다.

4.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산출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의무 강화

개정 소득세법 및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산출을 위한 관련 서류 미제출 시 1억원(중소기업은 5

천만원)을 한도로 유보소득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소득세법 제81조 제14항,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13항).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조 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13 | E-Mail. ccho@shinkim.com |
| ● 황인석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365 | E-Mail. i shwang@shinkim.com |
|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 TEL. 02 316 4219 | E-Mail. ihchung@shinkim.com |